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신혼여성을 중심으로

배호중\*·천재영\*\*

## 초 록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 활용된 주요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정책과 육아휴직 정책이며, 한국노동패널(KLIPS) 4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혼인 당시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여성이고,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과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을 나눈 뒤, 두 집단의 출산이행 기간(혼인~첫째아 생일 사이의 간격)과 3년 내 자녀출산 가능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있어서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의 출산가능성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출산, 일·가정 양립, 한국노동패널

\* 제1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baseball@kwidimail.re.kr)

\*\* 교신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kkjj345@kwidimail.re.kr)

## I. 서론

1980년대 초반 8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및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광범한 확산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사회로 접어들어 2001년 이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50만 명을 밑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출생아 수는 40.6만 명으로 1981년(86.7만 명)의 절반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합계출산율을 1.17명 수준으로 15년째 초저출산의 지속이라는 국가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통계청, 2017), 출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에서 장래 출산율 상승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sup>1)</sup>을 공유하고 있어(김현식, 2017a) 저출산 문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출산 관련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적 수단을 탐색하려는 맥락 속에서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현식, 2017b). 특히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는 통계자료를 통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실증분석들이 시도되고 있으며(김정석, 2007; 민현주, 2007; 민희철, 2008; 박수미, 2008; 정혜은·진미정, 2008; 김정호, 2009; 류기철·박영화, 2009; 민현주·김은지, 2011; 김현식·김지연, 2012; 송헌재, 2012; 정은희·최유석, 2013; 김현식, 2017b; 우해봉·장인수, 2017), 이를 근거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지목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또한 저출산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Becker, 1973; 천현숙 외, 2012; 이삼식 외, 2016).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혼인지연, 자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김두섭, 2007).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

---

1) 출산력 상승이 크지 않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원인으로는 출산력 장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구분에 따른 여성의 부담, 출산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젊은 층의 경쟁 강화 및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 미혼의 증가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을 거론하였다(김현식, 2017a).

라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9; 최준욱·송헌재, 2010; 천현숙 외, 2012). 출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체가 여성(아내)이므로 출산을 전후한 몸의 회복시간 등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의 휴식 및 회복기간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단지 이것 때문에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가 출산에 서로 다른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없다.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상충관계는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 가족친화제도(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미비 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을 주로 여성(아내)이 담당해야 한다는 풍토가 여전하고,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여건이 서구에 비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자녀돌봄의 공백을 야기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취업 여성들은 출산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출산지연·기피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김승권, 2004; 정성호, 2010; 장혜경 외, 2007; 이혜정·유규창, 2011; 한영선·이연숙, 2015).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과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같은 가정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개념적으로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이나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일·생활균형(work and life balance)으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포함됨으로써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을 제고라는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되었다(박중서·김문길·임지영,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근로자들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실제로 이것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이혜정·유규창, 2011).

저출산 문제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1980년대 후반 주로 인구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저출산 관련 연구(그 중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경제, 사회, 보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승희·김사현, 2008).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들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살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나 정책 영향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출산을 둘러싼 제도나 정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인구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는 기본적인 특성 외에도 비교적 짧은 정책의 역사성, 자료축적 미흡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정성호, 201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갱신되는 최저수준의 연간 출생아 수 등의 뉴스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제도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도의 수혜가능성에 바탕을 둔 논쟁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 그리고 양성 간의 갈등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자 가장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갖춘 정책(박종서·김문길·임지영, 2016)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sup>2)</sup>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난 15년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2002년 22,711명이던 출산전후 휴가자 수는 2016년 89,834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이용자 수는 2002년 3,763명에서 2016년 89,795명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한 지원금액 또한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출산전후 휴가 지원 금액은 2002년과 2016년 각각 22,602백만 원과 247,331백만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육아휴직 지원 금액의 경우 2002년 3,087백만 원에서 2016년 625,243백만 원으로 20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이처럼 제도의 활용인원이나 금액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출산력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규명은 인구학 출범 이래 핵심적인 관심사의 하나였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와 출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단편적 설명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화된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무렵 피임지식의 증대와 피임방법의 확산으로 출산에 대한 조절이 용이해짐에 따라 출산행위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김두섭, 2007). 자녀출산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선택)을 부각시킨 논의에서는 주로 자녀 또한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한 후 ‘자녀에 대한 수요(demand for children)’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Becker 등을 중심으로 ‘가족경제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영역이 탄생시키기도 하였다(김인철, 2014).

Becker는 자녀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자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효용함수(무차별곡선 및 예산제약) 개념을 활용하였는데(Kim, 1987; 김선숙·백학영, 2014에서 재인용) 부부의 효용함수 및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 = U(n, Z)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p_n n + \pi_z Z = I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단,  $n$ : 자녀 수,  $Z$ :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양,  $p_n$ : 자녀양육비용,  $\pi_z$ :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가격,  $I$ : 소득)

$n$ 과  $Z$ 의 최적배분은 주어진 자녀양육비용( $p_n$ ),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가격( $\pi_z$ ), 소득( $I$ )의 제약을 염두에 둔 효용극대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frac{\partial U}{\partial n} / \frac{\partial U}{\partial Z} = \frac{M_n}{M_z} = \frac{p_n}{\pi_z}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자녀에 대한 수요는 자녀의 상대가격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녀의 상대가격, 즉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가격( $\pi_z$ )에 대한 자녀양육비용( $p_n$ )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다른 최종생산물의 수요를 증가시킨다(Becker, 1994). Becker(1965 : 1993)는 자녀양육비용( $p_n$ )에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부모의 시간(주로 어머니의 시간)이라는 간접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시장재화 및 서비스와 부모의 시간이 결합된 가계생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한영선, 2013).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면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는 가구소득의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출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소득효과)과 함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대체효과)을 동시에 높이게 된다. 결국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와 크기에 따라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는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반대의 영향을 가져오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간의 길이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능성<sup>3)</sup>이다(Baizán, 2004; 박승희·김사현,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비추어보면 일·가정 양립 여건이 서구에 비해 열악하고 자녀양육을 주로 여성(아내)이 담당해야 한다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에서 아내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부부 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매우 크게 하고 있다(배호중, 2017).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크기로 존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간에 비양립성을 줄일 수 있다면 출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녀들

3) 아직은 1차 노동시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출산 이후 해당 일자리로의 복귀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경력단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봄에 보내는 취업한 어머니의 시간을 대체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출산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출산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등은 1960년대 이후 여성 노동참여 증가와 함께 관찰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한영선, 2013).

## 2. 선행연구 검토

### 1)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실제 출산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교한 이론적 논의들이 진전됨에 따라 출산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들을 종합해보면 국가, 시대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배호중·한창근, 2016).

일반적으로 소득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목되는데 소득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인다는 최초의 이론은 Malthus에서 찾을 수 있다(공선영, 2006; 김선숙·백학영, 2014에서 재인용). 그는 소득이 증가하면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기혼자는 금융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였다(Becker, 1960; 김두섭, 2007:30에서 재인용). 이러한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 1960년대 들어 보다 정교화된 이론을 통해 소득의 변화, 자녀의 효용, 기회비용 등의 개념을 차용해 자녀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소득과 함께 교육수준 또한 출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제시된다. 교육은 그 자체로도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치관, 소득, 모성사망률, 피임지식, 혼인연령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서도 출산과 관련성을 갖기도 한다(김두섭, 2007). 교육 이후 취업까지 함께 고려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관련성을 가짐을 보인 연구들이 상당한데(Hoffman, Thronton & Manis, 1978; Kohlmann, 2002)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여성일수록 자녀의 출산을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풀이하고 있다(이민아, 2013; Schultz, 1973).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있어 교육은 여성(아내)에게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역할을 부과하는데 반해, 남성(남편)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중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출산을 둘러싼 분석에 있어 흔히 남편의 교육은 '영구소득(permanent income)', 아내의 교육은 '기회비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Goldberg, 1975; 김두섭, 2007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거주지 또한 출산을 둘러싼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과거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출산력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서의 자녀 양육비용이 도시보다 적게 든다는 점과 사람의 노동력을 통한 농사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는 자녀 또한 일손의 일부로 활용이 가능해 농촌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되었다(정영숙, 2005:63). 개인 또는 가구를 둘러싼 지역의 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지역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정도나 양육친화적 환경 등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Bauernschuster et al., 2013; 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도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교육과 소득 그리고 (가임)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출산에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며, 출산은 '가계'를 단위로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의 어느 한 쪽의 요인뿐만 아니라 가계구성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호중·한창근, 2016).

##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간에 비양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은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출산이 촉진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증분석을 통해서 이를 제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해당 제도들이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북)유럽, 북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Gauthier & Hatzius(1997)는 1970~1990년 사이의 OECD 22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아~셋째아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지원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성 휴가 기간과 모성 휴가 급여 모두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

한 결과를 두고 종합적 정책이 아닌 단순한 하나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감소추세를 변화시킬 정도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다(허만형·이정철, 2011에서 재인용).

미국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모성휴가제도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이 제시되어 해당 자료의 20대 취업여성 표본(22세~28세) 분석을 통해 모성휴가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성휴가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출산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출산순위가 올라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veret & Whittington, 2001).

Duvander, Lappegard & Andersson(2010)은 1988~1999년 스웨덴 인구등록자료(Swedish population registers)와 1993~2003년 노르웨이 인구등록 거시자료(Norwegian population registers)를 이용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남성과 여성 모두)과 출산 간의 관계를 사건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버지들의 부모휴가 사용은 추가출산(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은 셋째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에서 재인용).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 자체뿐만 아니라 제도의 이용기간의 확대를 통해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제도를 확대하거나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주로 사용기간의 확대라는 제도 변경에 대해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출산을 둘러싼 휴가의 활용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Rønsen(2004)은 1988년 노르웨이 가족 및 직업조사(1988 Norwegian Family and Occupation Survey)와 1989년 핀란드 인구조사(1989 Finnish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하여 부모휴가의 확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모휴가의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는 출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첫 출산보다는 추가출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옴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확대가 핀란드에서는 첫 출산,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르웨이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Lalive & Zweimuller(2005)는 1990년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개정(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정된 휴가를 적용받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에 추가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4.9퍼센트 포인트(15%), 10년 이내에 추가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3.9퍼센트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휴가 개정이 자녀 출산 시기뿐만 아니라 자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Št'astná & Sobotka(2009) 또한 1989~2007년까지의 오스트리아 출생통계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1996년 및 2002년 부모휴가 규정의 변화가 둘째자녀 및 셋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으로 출생아 수, 출산순위, 출산간격, 월별 출생코호트 등을 이용하여 변경된 휴가규정을 적용받은 여성들의 출산순위별 출산율과 출산진도비 (parity progression ratio)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1990년의 부모휴가 개정 (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으로 인해 첫째자녀 혹은 둘째자녀 출산 이후 26개월 이내에 둘째자녀 혹은 셋째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추가자녀 출산을 촉진하여 자녀 간의 터울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oem, Prskawetz & Neyer, 2001; Prskawetz & Zagaglia, 2005) 자녀돌봄 휴가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여성의 결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Higuchi, 1996).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모성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Mamelle, Bertucat & Muno 1989; Chatterji & Markowitz, 2004; Guendelman et al., 2009).

국내의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미흡 등으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 본래의 목적 중 하나인 출산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해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이용경험에 따른 기대자녀 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전후 휴가는 그 자체로 추가 출산을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성보호를 통해 추가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예방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연령층에서의 초산이나 추가출산을 용이케 하여 기대자녀 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혜정·유규창(2011)은 여성관리자 패널조사(KWMP: Korean Women Manager Panel)를 이용해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시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여부

는 출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개인이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의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분석결과 비록 순수한 정책 효과로서 제한적이지만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한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2배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 Ⅲ. 이용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 1. 이용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가능성이 여성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KLIPS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패널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혼인이나 출산이 활발히 일어나는 연령층에 초점을 두고 축적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배호중·한창근, 2016).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패널자료가 구축된 KLIPS의 경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수의 표본들이 혼인, 출산 등 중요한 생애주기 사건을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패널조사인만큼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가능성을 함께 묻고 있어 이 연구의 분석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주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로 한정시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혼인당시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중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

로 나누어 혼인 이후 그들의 출산이행기간을 살펴보았다.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아내 또는 남편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가계’를 단위로 하여 남편과 아내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보다는 부부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모형이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가구번호 및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통해 아내와 남편을 연결시킨 후 분석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혼외 출산은 2% 이하로, 출산의 절대 다수는 혼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이상림, 2013) 이를 염두에 두고 가구번호 및 가구원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아내와 남편의 정보를 추출하여 KLIPS 4차~19차년도 자료 중 처음 결혼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를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출산시점과 관련해서는 월(月) 단위로 측정하 ‘혼인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분석 시간(analytical time)으로 설정하였다. 개인별로 비교가능한 출산시점을 설정함에 있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만 개인별로 교육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학입학과정에서의 재수나 재학 중의 휴학 경험 등으로 서로 다른 졸업시점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학 중에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한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출산 당시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2001년 이후 혼인을 경험한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여성표본을 대상으로 이들의 혼인 후 첫 출산까지의 기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 중 하나의 변수 값에라도 누락이 있으면 그 사례는 제거하는 완전사례법을 사용하여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 결국 자료를 다루는데 있어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Allison, 2002; 김현식, 2017b에서 재인용).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인 530명의 신혼여성(및 그들의 남편)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혼인~첫 출산 시점’ 사이의 기간에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이용가능성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변수의 구성

### 1) 종속변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이용가능성이 실제 자녀출산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출산 상태로 이행할 확률(hazard ratio)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자녀출산이라는 '사건(event)의 발생여부'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이행기간)'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KLIPS에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질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4차년도(2001년) 이후 새롭게 혼인한 부부를 추출하여 가구정보를 병합시킨 후 그들이 응답한 '혼인일자'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의 첫째아'로 응답된 표본이 출생한 경우 첫째아의 생년월을 추출하여 월(月) 단위로 계산한 둘 사이의 기간을 종속변수(=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로 설정하였다.<sup>4)</sup>

자녀출산에 소요된 기간 외에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특정한 기간 내에 출산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출산은 혼인 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이라 판단되어 혼인 이후 3년 이상 추적조사된 가구 중 3년 내 출산을 경험한 가구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따라 3년 내 출산 경험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sup>5)</sup>

4) 이처럼 자녀출산이라는 사건의 발생여부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자녀출산 상태로의 이행확률을 산출함에 있어 중간에 표본이 이탈된 경우나 최종조사시점까지 출산이 일어나지 않은 표본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측절단(right censoring)된 가구임을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통해 이들을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5) 특정기간 내 출산의 잦대로 '혼인 후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상당수의 첫 출산이 혼인 초기에 일어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실제로 분석대상 표본 중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24.3%는 혼인 후 1년 내에, 33.0%는 1~2년 사이에 출산하였고, 18.1%는 2~3년 사이에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첫 출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 후 3년 내에 상당수의 출산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규모 통계조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는 평균 19.6개월(김두섭 외, 2007)이었으며,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에서는 초혼부부의 첫째자녀 평균 출산 소요기간이 평균 15.0개월(통계청, 2016)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휴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KLIPS에서는 4차년도(2001년)부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직장에서 제공 여부와 본인의 혜택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해당 제도를 제공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직장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다 할지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 가변수를 생성하였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부 중 아내(여성)의 혼인 당시 활용가능성만을 고려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경우 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까지 고려하고자 한다면 남편이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어 다수의 표본이 분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남성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남성은 극히 적어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그릇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아직까지는 주로 남편(남성)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보다는 아내(여성)의 활용가능성이 자녀출산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내(여성)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자녀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이 각각 동일한 형태로 대응되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영향력보다는 '가계'를 단위로 공동의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남편과 아내라는 가계구성원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sup>6)</sup>.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요인인지에 따라 출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로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직업이나 노동시

6) 출산을 둘러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쪽의 특성만을 고려하거나 전체적인 가구특성(예컨대 가구소득)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많다.

장 참여 혹은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의향 및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기존 연구들(Sorenson, 1989; Yang, 1993; Corijn, Liebroer & de Jong Gierveld, 1996; Kreyenfeld, 2002; Stein, Willen & Pavetic, 2014)은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구분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우해봉·장인수,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혼인 당시 연령, 교육수준, 소득을 분리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들 변수는 연속형의 변수로 활용하되 혼인당시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구별로 혼인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한 후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도 함께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신혼가구의 소재지, 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액 그리고 신혼 당시 자가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였다. 가구특성 변수 중 금액으로 나타나는 변수의 경우 소득과 마찬가지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기초통계분석

####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2001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인 여성(아내) 표본 및 가구의 기초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 630 가구 중 81.9%에 달하는 516 가구가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혼인 후 출산까지의 기간'은 평균 23.2개월(약 1.93년)이었다. 또 다른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 '혼인 후 3년 내 출산 여부' 변수의 경우 3년 이상 추적조사된 530 가구 중 73.4%에 달하는 389 가구가 혼인 이후 3년 사이에 자녀출산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아내의 연령은 28.1세, 남편 30.3세였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각각 14.6년과 15.0년으로 전문대졸업 이상의 교육연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당시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했을 때 193.4만 원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평균 262.7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소득이 70만 원 가량 높았다.

가구특성 중 신혼가구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24.0%가 서울에 신접살림을 차

렸으며, 30.2%는 광역시에, 42.7%는 시(市)지역에 거처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 당시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평균 2,3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1,600만 원 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2.4%의 가구는 집을 소유한 상태로 신혼생활을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혼인 당시 여성(아내)의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면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여성(아내) 중 57.8%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42.2%에 달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비율로 활용가능성이 나타났다.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에 못 미치는 45.9%의 여성 임금근로자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역으로 54.1%의 여성 임금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해당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혼인 당시 여성 임금근로자)

변수특성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의 경우 %, 빈도)	
종속변수	첫 출산 경험 여부	81.9	516
	혼인~출산까지의 기간(개월)	23.231	18.478
	혼인 후 3년 내 출산 여부(N=530)	73.4	389
혼인 당시 아내특성	연령	28.127	3.009
	교육수준(년)	14.622	1.760
	ln(월소득)	5.153	0.592
	월소득(만 원)	193.435	80.681
혼인 당시 남편특성	연령	30.317	3.174
	교육수준(년)	14.973	1.922
	ln(월소득)	5.252	1.310
	월소득(만 원)	262.687	128.935
혼인 당시 가구특성	신혼가구 소재지1: 서울	24.0	0.427
	신혼가구 소재지2: 광역시	30.2	0.459
	신혼가구 소재지3: 시	42.7	0.495
	신혼가구 소재지4: 군지역	3.2	0.175
	ln(부채액)	3.214	4.027
	부채액(만 원)	2,300.46	5,417.68

변수특성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의 경우 %, 빈도)	
	ln(금융자산액)	5.126	3.199
	금융자산액(만 원)	1,610.49	3,939.17
	자가보유 여부(자가=1, 기타=0)	32.4	204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57.8	364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45.9	289
N		630	

주: '혼인~출산까지의 기간(개월)'의 경우 N=516, '혼인 후 3년 내 출산 여부'의 경우 N=530

##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차이

여기서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또 다른 종속변수로 활용한 '3년 내 출산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2>에는 혼인 이후 3년 이상 추적조사된 가구(530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당시 아내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혼인 이후 3년 내 자녀를 출산하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담겨있다.

<표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차이

(단위: 명, %)

		혼인 후 3년 내 미출산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검정통계량( $\chi^2$ )
출산전후 휴가 (N=530)	활용불가능	76 (33.9)	148 (66.1)	10.661***
	활용가능	65 (21.2)	241 (78.8)	
육아휴직 (N=530)	활용불가능	94 (32.1)	199 (67.9)	10.070***
	활용가능	47 (19.8)	190 (80.2)	

주: \*\*\* p<0.01, \*\* p<0.05, \* p<0.1

우선 출산전후 휴가의 활용가능성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던 여성임금근로자의 경우 66.1%가 출산을 경험한 반면 33.9%는 무자녀 상태가 지속되었다. 반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임금근로자의 87.8%는 혼인 후 3년 내에 자녀출산 경험이 있어 출산전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출산경험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0.661$ ).

이어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를 살펴 보았다. 혼인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여성임금근로자의 경우 67.9%만 출산을 경험한 반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임금근로자의 80.2%가 혼인 후 3년 내에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의 출산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chi^2=10.070$ ).

#### IV.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출산 이행

##### 1. 혼인 후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생존자 함수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아내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는 우선 Kaplan-Meier 추정방법을 통해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자 함수(survivor function)를 산출하여 도식화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이나 육아휴직을 활용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출산가능성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았다.

Kaplan-Meier 추정방법은 특정 상태의 변화 발생(=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계산에서는 승법극한(product-limit) 추정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상태의 변화가 해당 측정 시점( $t$ )을 지나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존자 함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한준, 2005; 오지혜·임정재, 2016에서 재인용).

$$G(t) = \prod_{l: \tau_l < t} \left(1 - \frac{E_l}{R_l}\right)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 $E_l$ : 시점  $\tau_l$ 에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의 수,  $R_l$ : 시점  $\tau_l$ 에 위험집합에 속해있던 경우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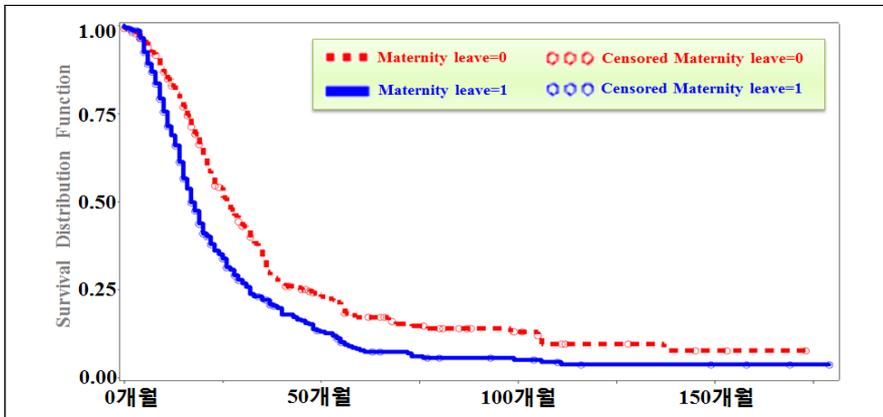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첫 출산을 경험한 경우(=첫자녀가 태어난 경우) 사건(event)이 발생한 것으로 삼으며,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이 분석하고자 하

는 생존기간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존기간은 월(月) 단위로 환산한 기간을 이용하였으며, 표본이탈 등의 사유로 우측으로 절단된 표본(최종조사 시점까지 무자녀 상태인 경우에도 우측절단된 것으로 간주)에 대해서는 절단된 변수임을 나타내는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특성 차이에 따른 집단 간(여기서는 제도 활용가능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출산 이행 상태로의 변화 양상 차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출된 생존자 함수는 살펴보고자 한 특정한 요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그 외의 변수들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임에 유의해야 한다.

### 1)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출산 이행: K-M Curve

먼저 출산전후 휴가를 중심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에 혼인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 상태로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가로축은 혼인 후 경과기간(月)이며, 세로축은 생존확률(=무자녀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그림 1] 출산전후 휴가 활용 가능여부에 따른 첫 출산에 대한 생존자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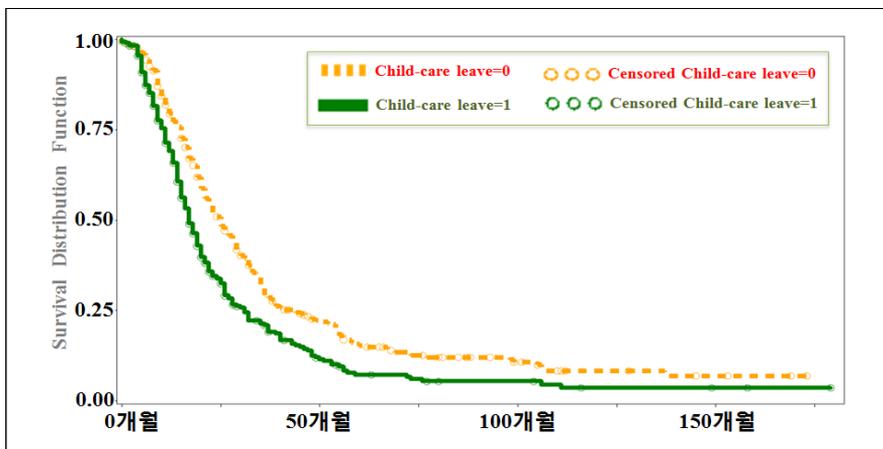
두 집단 모두 혼인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누적되어 무자녀 상태로 남아있는 가구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파란실선)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집단(=빨간점선)에 비해 혼인 후 기간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산을 경험해 생존자 함수가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지 살펴보고자 Log-Rank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64$ ).

## 2)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출산 이행: K-M Curve

앞에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의 차이에 따른 출산 이행가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여기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에 혼인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 상태로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2]는 육아휴직 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첫 출산에 대한 생존자 함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녹색실선)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집단(=주황점선)에 비해 혼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산을 경험해 생존자 함수가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는 Log-Rank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20.10$ ).



[그림 2] 육아휴직 활용 가능여부에 따른 첫 출산에 대한 생존자 함수

## 2. 첫째아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앞에서 살펴본 Kaplan-Meier 추정방법을 통한 사건발생 양상에 대한 차이 분석은 각 계층(strata)별로 사건 이행 가능성의 차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분짓고자 했던 특성 외의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따른 차이 정도만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제시한 [그림 1]과 [그림 2]의 경우에도 다른 요인들은 통제하지 못한 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 여부만 구분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출산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혼인과 출산이라는 두 사건 간의 시간 간격(time interval) 또한 부부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Kaplan-Meier 추정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부부를 둘러싼 다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양한 속성이 특정한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의 하나로 Cox의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측 절단된 표본이 존재할 때에도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치성을 가진 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데(박재빈, 2006; 전현중 외, 2009; 황창하·심주용, 2012) 본 연구에서는 최종 조사시점까지 출산한 경험이 없는 우측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일치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Cox의 비례위험모형에 이용되는 해저드 함수( $h(t)$ )는 사건이 관찰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관찰하고자 했던 특정한 사건(여기서는 출산)이 특정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김양진, 2013:20). 여기서는 무자녀 상태에 있다가 자녀를 출산한 상태로 이행(탈출)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하며 특정시점( $t$ )에서 유자녀 상태로 이행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은 <식 2>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leq t + \Delta t | T > t]}{\Delta t}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이는 또한 아래의 식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는데 사건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벡터( $x$ )를 가지는 관측치의 특정시점( $t$ )에서의 해저드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전현중 외, 2009). 여기서  $h_0(t)$ 는  $t$ 시기의 기본위험(baseline hazards)이라고 불리며, 이는 설명변수들이 0의 값을 가질 때의 위험을 나타낸다(김현식, 2017).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무자녀→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을 살펴본 것이므로 (+)의 계수값은 출산으로의 이행에 대한 위험배율(hazard ratio) 또는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 확률이 높음을 나타내며, (-)

의 계수값은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h(t) = h_0(t) e^{\beta_1 x_1 + \dots + \beta_k x_k}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 1)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 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을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형을 설계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형 I]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가변수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II]는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아내 및 가구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어 [모형 III]에서는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였다.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출산전후 휴가 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자녀 출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 [모형 III]을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비가 1.365로 이는 출산 위험이 약 36.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의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 모두 혼인 당시의 소득 변수는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혼인 당시의 교육수준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의 값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출산 위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지역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신혼부부의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출산 위험이 약 27.8% 낮았으며, 시(市)지역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출산 위험이 20.6% 가량 낮았다. 혼인당시 부채액과 금융자산액의 경우 각각 (-)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신혼 당시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주택의 경우 이를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출산 위험이 약 29.1% 높았다.

〈표 3〉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와 첫 출산 상태로의 이행(Proportional hazard model)

혼인 당시 특성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치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0.419***	0.090	1.520	0.336***	0.100	1.399	0.312***	0.101	1.365
아내 특성	연령				0.000	0.016	1.000	0.002	0.019	1.002
	교육수준(년)				0.040	0.026	1.041	0.019	0.032	1.020
	ln(월소득)				0.112	0.089	1.118	0.107	0.088	1.113
남편 특성	연령				-	-	-	-0.002	0.017	0.998
	교육수준(년)				-	-	-	0.027	0.030	1.027
	ln(월소득)				-	-	-	0.074*	0.039	1.077
가구 특성	소재지1: 군지역				0.087	0.257	1.090	0.119	0.260	1.126
	소재지2: 시지역				-0.235**	0.104	0.791	-0.230**	0.104	0.794
	소재지3: 서울				-0.309**	0.124	0.734	-0.326***	0.125	0.722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16	0.012	0.984	-0.021*	0.012	0.979
	ln(금융자산액)				0.010	0.014	1.010	0.003	0.015	1.003
	자가보유 여부				0.243**	0.099	1.275	0.255***	0.099	1.291
모형검정 통계량	-2Log L		5765.066			5745.748			5740.686	
	AIC		5767.066			5765.748			5766.686	
	SBC		5771.313			5808.210			5821.885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Likelihood Ratio		21.954***			41.272***			46.335***	
	Score		21.798***			40.856***			45.540***	
	Wald		21.490***			40.491***			45.174***	
N			630			630			630	

주: \*\*\* p<0.01, \*\* p<0.05, \* p<0.1

## 2) 혼인 당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 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앞서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자녀출산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혼인 당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앞선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도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자녀 출산가능성이 높았다.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 [모형 III]을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비가 1.297로 이는 출산 위험이 약 29.7% 높음을 의미한다.

그 밖의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 분석에서와 계수값의 부호와 유의도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남편의 혼인 당시의 소득 변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자녀출산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출산 위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신혼부부에 비해 서울이나 시지역에 신혼집을 마련한 이들의 경우 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과 시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출산 위험이 각각 27.5%와 20.0% 가량 낮았다. 아울러 자가를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출산 위험이 약 27.5% 높았다.

〈표 4〉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첫째아출산 이행(Proportional hazard model)

혼인 당시 특성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치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육아휴직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0.388***	0.089	1.475	0.281***	0.098	1.324	0.260***	0.100	1.297
아내 특성	연령				-0.004	0.016	0.996	0.001	0.019	1.001
	교육수준(년)				0.035	0.026	1.036	0.014	0.032	1.014
	ln(월소득)				0.143*	0.089	1.154	0.133	0.087	1.143
남편 특성	연령				-	-	-	-0.005	0.017	0.995
	교육수준(년)				-	-	-	0.027	0.030	1.028
	ln(월소득)				-	-	-	0.076**	0.038	1.079
가구 특성	소재지1: 군지역				0.089	0.258	1.093	0.130	0.260	1.139
	소재지2: 시지역				-0.228**	0.104	0.796	-0.223**	0.104	0.800
	소재지3: 서울				-0.305**	0.124	0.737	-0.322***	0.125	0.725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16	0.012	0.984	-0.021*	0.012	0.980
	ln(금융자산액)				0.014	0.014	1.014	0.007	0.015	1.007
	자가보유 여부				0.229**	0.099	1.257	0.243**	0.099	1.275
모형검정 통계량	-2Log L		5768.151			5749.039			5743.529	
	AIC		5770.151			5769.039			5769.529	
	SBC		5774.397			5811.500			5824.728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Likelihood Ratio		18.870***			37.981***			43.492***	
	Score		19.362***			38.184***			43.265***	
	Wald		19.130***			37.883***			42.997***	
	N		630			630			630	

주: \*\*\* p<0.01, \*\* p<0.05, \* p<0.1

## V.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3년 내 출산가능성

앞에서는 혼인 후 자녀출산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3년을 기준으로 삼아 혼인 이후 3년 이상 추적조사된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간 내에 출산을 경험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sup>7)</sup>. 구체적으로는 혼인 후 3년 내 출산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항로짓(Binary Logi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pi_i$ 는 자녀를 출산했을 확률을 나타내고,  $1 - \pi_i$ 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을 확률을 의미한다.

$$\log\left(\frac{\pi_i}{1 - \pi_i}\right) = \alpha + \beta_i(\text{아내 특성}) + \gamma_i(\text{남편 특성}) + \delta_i(\text{가구 특성}) \\ + \zeta_i(\text{제도 활용 가능성}) + \epsilon_i$$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 또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형을 설계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I]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가변수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II]는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아내 및 가구특성을 함께 고려

7) 비록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첫 출산은 혼인 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이삼식 외, 2005; 김두섭 외, 2007), 이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해당 기간 동안의 출산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혼인, 출산을 둘러싼 연령규범이나 순서규범 등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사회에서 해당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제IV장에서 실시한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가능성에 따른 출산속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제V장에서 시도하고자 한 혼인 이후 특정기간(여기서는 3년) 내의 자녀출산에 일·가정 양립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 간의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어 [모형 III]에서는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였다.

### 1)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가능성

〈표 5〉에는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자녀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해 분석을 시도한 [모형 III]을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 $=e^{0.538}$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혼인 당시 아내와 남편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3년 내 출산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 지역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3년 내 출산가능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과 시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3년 내 출산가능성이 각각 53.6% ( $=e^{-0.768}$ )와 45.7% ( $=e^{-0.611}$ )가량 낮았다. 혼인 당시 부채액과 금융자산액의 경우 각각 (-)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으며, 자가보유 또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5〉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와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대한 분석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E</i>	Wald $\chi^2$	$\beta$	<i>S.E</i>	Wald $\chi^2$	$\beta$	<i>S.E</i>	Wald $\chi^2$
출산전후 휴가	상수항	0.666***	0.141	22.298	-1.333	1.278	1.088	-2.465*	1.465	2.832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0.644***	0.199	10.511	0.550**	0.220	6.268	0.538**	0.223	5.834
혼인당시 아내특성	연령				0.005	0.037	0.016	-0.022	0.044	0.254
	교육수준(년)				0.124**	0.060	4.239	0.105	0.072	2.105
	ln(월소득)				0.112	0.169	0.439	0.126	0.170	0.550
혼인당시 남편특성	연령				-	-	-	0.048	0.040	1.461
	교육수준(년)				-	-	-	0.021	0.066	0.103
	ln(월소득)				-	-	-	0.074	0.076	0.953
혼인당시 가구특성	소재지1: 군지역				0.479	0.799	0.359	0.477	0.801	0.354
	소재지2: 시지역				-0.610**	0.251	5.911	-0.611**	0.252	5.882
	소재지3: 서울				-0.717**	0.287	6.256	-0.768***	0.291	6.963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35	0.026	1.783	-0.039	0.027	2.154
	ln(금융자산액)				0.017	0.032	0.275	0.010	0.033	0.102
	자가보유 여부				0.099	0.228	0.186	0.096	0.229	0.174
AIC		607.463			607.897			611.094		
SIC		616.009			654.898			670.914		
-2log L		603.463			585.897			583.094		
Likelihood Ratio		10.572***			28.138***			30.941***		
Score		10.661***			27.278***			29.959***		
Wald		10.511***			25.837***			28.236***		
N		530			530			530		

주: \*\*\* p<0.01, \*\* p<0.05, \* p<0.1

## 2) 혼인 당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가능성

〈표 6〉에는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서도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해 분석을 시도한 [모형 III]을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결과를 살펴보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서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e^{0.510}$ ) 가량 높았다. 여기서도 혼인 당시 아내와 남편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제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3년 내 출산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 지역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3년 내 출산가능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과 시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3년 내 출산가능성이 각각 54.5%( $=e^{-0.787}$ )와 46.3%( $=e^{-0.622}$ ) 가량 낮았다. 여기서도 혼인 당시 부채액과 금융자산액의 경우 각각 (-)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으며, 자가보유여부 변수 또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6〉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대한 분석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 E</i>	Wald $\chi^2$	$\beta$	<i>S. E</i>	Wald $\chi^2$	$\beta$	<i>S. E</i>	Wald $\chi^2$
육아 휴직	상수항	0.750***	0.125	35.913	-1.086	1.298	0.700	-2.189	1.492	2.153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0.647***	0.205	9.915	0.541**	0.227	5.667	0.510**	0.229	4.957
혼인 당시 아내 특성	연령				0.002	0.037	0.002	-0.022	0.044	0.247
	교육수준(년)				0.109*	0.061	3.185	0.087	0.073	1.418
	ln(월소득)				0.133	0.166	0.640	0.148	0.168	0.784
혼인 당시 남편 특성	연령				-	-	-	0.042	0.040	1.115
	교육수준(년)				-	-	-	0.029	0.066	0.192
	ln(월소득)				-	-	-	0.072	0.076	0.903
혼인 당시 가구 특성	소재지1: 군지역				0.454	0.798	0.324	0.460	0.799	0.331
	소재지2: 시지역				-0.626**	0.251	6.209	-0.622**	0.252	6.109
	소재지3: 서울				-0.743***	0.287	6.699	-0.787***	0.291	7.314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35	0.026	1.837	-0.040	0.027	2.244
	ln(금융자산액)				0.024	0.032	0.580	0.018	0.032	0.305
	자가보유 여부				0.095	0.228	0.172	0.095	0.229	0.173
AIC		607.784			608.409			611.904		
SIC		616.330			655.411			671.724		
-2log L		603.784			586.409			583.904		
Likelihood Ratio		10.251***			27.625***			30.131***		
Score		10.070***			26.490***			28.946***		
Wald		9.915***			25.168***			27.363***		
N		530			530			530		

주: \*\*\* p<0.01, \*\* p<0.05, \* p<0.1

## VI. 결론 및 함의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 중에서도 출산율의 변화 및 출산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변화일 것이다(배호중·한창근, 2016). 특히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박승희·김사현, 2008; 김태현, 2012).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또는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책도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목표하고자 했던 출산율의 괄목할만한 상승에는 이르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초저출산 국가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확산하거나 확충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상태로 머물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매년 갱신되는 최저수준의 연간 출생아 수 등의 뉴스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제도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 또한 상당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 또한 이전에 비해 상당히 확충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성이나 수혜가능성에 따른 논쟁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4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 중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로 나누어 혼인 이후 그들의 출산이행기간(혼인~첫째아 생일 사이의 간격)과 3년 내 자녀출산가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 여성(아내)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 가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해 본 결과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가능성이 36.5%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29.3%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혼인 이후 3년 내 출산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들의 출산가능성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 또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 본래의 목적인 중 하나인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해당제도들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활용인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여전히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57.8%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5.9%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 당시 일자리의 경우 혼인 및 출산 등으로 인해 겪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력단절 이후의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일자리에서조차 해당 제도들의 활용가능성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임기 여성 근로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해당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낮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가임기 여성 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또한 저출산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 중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이 개별 가구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된 최근에 혼인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여성근로자(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구특성 및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해 단순히 제도의 활용가능 여부만을 살폈을 뿐 이용가능기간이나 소득대체율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근로의 질이나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와 함께 출산 후 근로지속(복귀) 여부나 출산의향, 추가출산 등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된다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8).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고용보험 DB자료)」.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504](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504)에서 2018.1.16. 인출.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19권. 119-149.
- 김두섭(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김정석(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숙·백학영(201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3호. 129-157.
-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1-34.
- 김양진(2013). 생존분석. 파주: 자유아카데미.
- 김인철(2014). “가족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장기 출산율”. *경제학연구*. 제62권 제1호. 5-28.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제30권 제2호. 97-116.
- 김정호(2009).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1권 제1호. 105-138.
- 김태현(2012). “우리나라 인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건복지포럼*. 통권 191호. 6-16.
- 김현식(2017a).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한 출산력 추계”. *통계연구*. 제22권 제2호. 1-25.
- 김현식(2017b).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제40권 제3호. 51-78.
- 김현식·김지연(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3호. 5-32.
- 류기철·박영화(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제32권 제1호. 1-23.
- 민현주(2007). “엄마의 취업과 자녀태움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106-126.

- 민현주·김은지(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제45권 제4호. 198-222.
- 민희철(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41-61.
-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제31권 제1호. 55-73.
- 박승희·김사현(2008).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서울: 뉴패러다임센터.
- 박재빈(2006).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신광출판사.
-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 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배호중(2017).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이후 초혼가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호중·한창근(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3호. 204-238.
- 송헌재(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제14권 제3호. 51-78.
- 오지혜·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50권 제5호. 203-245.
- 우해봉·장인수(2017). “출산에 대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 한국인구학. 제40권 제3호. 79-105.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143-176.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계봉오·김경근·김동식·서문희·윤자영·이상협·이윤석·천현숙(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서문희·박세경·윤홍식·진미정(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심층분석: 저출산원인과 정책방향.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4호. 39-71.
- 이혜정·유규창(2011).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80권 제1호. 37-79.
- 장혜경·김혜영·최숙희·이은진(2007).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 총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현중·류장수·조장식·박성익·김종한(2009). “누리사업단 대학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2권 제1호. 31-56.
- 정성호(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제49권 제1호. 69-91.
-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 31-52.
- 정영숙(2005). 결혼경제와 시장경제.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 정은희·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1호. 5-34.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제31권 제1호. 147-164.
- 전현숙·김영표·정희남·김혜승·하수정·김진범 외(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안양: 국토연구원.
- 최준욱·송헌재(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통계청(2016).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2016.12.26.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36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36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8.1.15. 인출.
- 통계청(2017). “2016년 출생 통계(확정)”. (2017.8.29.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257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257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8.1.15.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2016). 한국노동패널 1~18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한영선(2013). 여성취업과 일·가정양립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영선·이연숙(2015). “여성취업과 일·가정양립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1), 49-66.

- 한준(2005). “사건사분석”. 이재열 편.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19-268.
- 허만형·이정철(2011).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 경향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387-411.
- 황창하·심주용(2012). “생존자료분석을 위한 혼합효과 최소제곱 서포트벡터기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4호. 739-748.
- Allison, P. D. (2002) Missing Dat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Averett, S. L. & Whittington, L. A.(2001). Does maternity leave induce births?. *Southern Economic Journal*. 68(2). 403-417.
- Baizán, P.(2004). Couples’ careers and fertility An event-history analysis of the ECHP samples of Denmark, Italy, Spain, and United Kingdom. ESPAnet conference: Oxford, September 9-11, 2004.
- Bauernschuster, S., Hener, T., & Rainer, H. (2013). Does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increase birth rates? Evidence from a low-fertility country. Beiträge zur Jahrestagung des Vereins für Socialpolitik 2013: Wettbewerbspolitik und Regulierung in einer globalen Wirtschaftsordnung - Session: Fertility, No. D11-V1.
- Becker, G. S.(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pp.209-24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Becker, G. S.(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Becker(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199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tterji, P., & Markowitz, S.(2004). Does the length of maternity leave affect maternal health?(No. w1020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orijn, M., Liefbroer, A. C., & de Jong Gierveld, J.(1996). It takes two to tango, doesn't it? The influence of couple characteristics on

- the timing of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1). 117-126.
- Duvander, A. Z., Lappegård, T., & Andersson, G.(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 45-57.
- Gauthier, A. H. & Hatzius, J.(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 Goldberg, D.(1975). Socioeconomic theory and differential fertility: the case of the LDCs. *Social Forces*. 54(1). 84-106.
- Guendelman, S., Pearl, M., Graham, S., Hubbard, A., Hosang, N., & Kharrazi, M.(2009). Maternity leave in the ninth month of pregnancy and birth outcomes among working women. *Women's Health Issues*. 19(1). 30-37.
- Higuchi, Y.(1996). An Empirical Study of Child Care Leave in Japan: Marriage, Childbirth, and Job Retention. *Keio Business Review*. 33, 33-51.
- Hoem, J. M., Prskawetz, A., & Neyer, G.(2001). Autonomy or conservative adjustment?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and educational attainment on third births in Austria, 1975-96. *Population Studies*. 55(3). 249-261.
- Hoffman, L. W., Thornton, A., & Manis, J. D.(1978).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 Environment*. 1(2). 91-131.
- Kim, D. S.(1987). *Socioeconomic status, inequality and fertility*. Seoul: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hlmann, A.(2002). Fertility intentions in a cross-cultural view: The value of children reconsidere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 Kreyenfeld, M.(2002). Time-Squeeze, Partner Effect or Self-Selection?: An Investigation into the Positive Effect of Women's Education on Second Birth Risks in West Germany. *Demographic Research*. 7(2). 15-48.

- Lalive, R. & Zweimüller, J.(2009). How does parental leave affect fertility and return to work?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3). 1363-1402.
- Mamelle, N., I. Bertucat & F. Munoz(1989). Pregnant women at work: rest periods to prevent preterm birth?. *Pediatric and Perinatal Epidemiology*. 3(1). 19-28.
- Prskawetz, A., & Zagaglia, B.(2005). Second births in Austria.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43-170.
- Rønsen, M.(2004). Fertility and public policies - Evidence from Norway and Finland. *Demographic Research*. 10(6). 143-170.
- Schultz, T. W.(1973). The value of children: an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S2-S13.
- Sorenson, A. M.(1989). Husbands' and Wives' Characteristics and Fertility Decisions: A Diagonal Mobility Model. *Demography*. 26(1). 125-135.
- Št'astná, A., & Sobotka, T.(2009). *Changing parental leave and shifts in second and third-birth rates in Austria*(No. 7/2009).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 Stein, P., Willen, S. & Pavetic, M.(2014). Couples' Fertility Decision - Making. *Demographic Research*, 30(63), 1697-1732.
- Yang, P. Q.(1993). The differential effects of husbands' and wives' statuses on marital fertility. *Population & Environment*. 15(1). 43-58.

Abstract

## The Effects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 Usability on Childbirth: Focusing on New-Married Women

Ho-Joong, Bae\*·Jae-Yeong, 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the institutional support policies for women's work-family balance, which was emphasized as a method of coping with the issue of the low birthrate, affected the actual childbirth. In particular, it analyses the effect of the usability of such systems a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ies for the work-family balance—on the actual childbirth.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of the 4th to 19th years were us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to-childbirth period (between the date of marriage and the birthday of the first child) and in the likelihood of childbirth within three years between female wage earners able to use maternity,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 and those unable to use them at the time of marriage.

At the time of marriage, the female wage earners expected to be able to us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it; the female wage earners expected to be able to use childcare leave were also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it. The female wage earners able to use these systems were also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within three years after marriage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th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mpirically analyses the positive effects of maternity and parental or childcare leave usability on childbirth among female wage earners and re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women's work-family balance, which was emphasized as a method of coping with the issue of the low birthrate, is justifiable.

**Keywords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work-family balance, childbir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childcare leave

---

\*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